

의안번호	제 111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12월 21일 (제369회)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8년 12월 21일

#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8년 12월 21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결정한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비(월정수당)를 조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조정(안 제3조) : 현행 월정수당 월 3,000,000원(연 36,000천원)
  - 2019년도 : 36,936천원
    - ※ 2018년 월정수당 지급액(36,000천원)에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.6%를 합산
  - 2020년도 :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
  - 2021년도 :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
  - 2022년도 :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
- 적용시기 :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

## 3. 개정규칙안 : 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- 「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」 2019년도 의정비 결정통보 공문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월정수당은 “월 3,000,000원으로”를 “별표 1과 같이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 2”로, “별표 2”를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별표 1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칙

-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조례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월정수당 지급기준(제3조 제1항 관련)

연 도	지 급 액
2019년도	연 36,936,000원 (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(36,000천원)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.6%를 합산하여 반영)
2020년도	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.
2021년도	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.
2022년도	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.

※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월정수당)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<u>월 3,000,000원으로</u> 한다.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여비지급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의 국내여비는 <u>별표 1</u>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, 국외여비는 <u>별표 2</u>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 ..... ..... <u>별표 1과 같이</u> ...: ..... .....: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여비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<u>별표 2</u>..... ..... ..... <u>별표 3</u>..... ..... .....:</p>

# 관계 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.>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., 2014.6.3.>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# ☐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(공문)

"함께하는 도민, 일등경제 충북"



##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



수신자 수신처 참조


(경유)

제목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019~2022년 의정비 의결사항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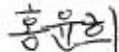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 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~2022년 의정비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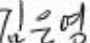
- 의정활동비: 2019~2022 / 매년 18,000천원을 지급한다.
  - ※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4에 따른다.
- 여비: 2019~2022 /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  - ※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 5에 따른다.
- 월정수당
  - 2019년도: 연 36,936천원
    - ※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(36,000천원)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2.6%를 합산하여 반영한다.
  - 2020년도: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을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.
  - 2021년도: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을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.
  - 2022년도: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을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.

끝.

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

수신처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의회의장

★주무관 

의회협력팀장 

위원장 

협조자

시행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-1 (2018.12.17.) 접수

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(문화동)

전화 043) 220-2142 /전송 043) 220-2119 / cando03@korea.kr

<http://www.cb21.net>

/ 대국민공개